보일러 운반작업 중 추락 사망

재 해 개 요

경기도 소재 작업장의 증기보일러를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하여 건물밖에 있는 일 반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여 2층으로 운반하려 하였지만 보일러의 높이가 리프트 케이지보 다 높아 리프트에 싣을 수 없자 리프트의 케이지를 떼어낸 후 호이스트 훅과 보일러의 연 통부위를 연결해 2층으로 운반한후 재해자등 3명이 보일러를 건물안쪽으로 잡아당기던 중 보일러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려 하자 순간적으로 보일러를 잡다가 보일러와 같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

재 해 사 진







(건물외벽에 설치된 리프트)

(순간적으로 잡은 손잡이부분) (평평하지못한 작업장 바닥상태)

재해발생 과정

- ▶ 보일러기사가 싣고 온 보일러의 높이가 리프트 케이지 보다 10cm높아 싣을 수 없어 보일러 설치기사와 보일러대표 2명이 리프트의 케이지를 떼어낸 후 호이스트 훅과 보일러의 연통부위 를 연결해 2층 공장으로 올라가 보일러를 2층 출입구 쪽으로 들어올림.
- ▶ 보일러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보일러 설치기사, OOO식품 대표, 재해자(OOO식품직원)은 호이 스트 훅에 매달린 보일러를 건물안쪽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내려 놓았으나 건물바닥이 평평하 지 못해 보일러가 건물 밖으로 떨어지려 하자 순간적으로 재해자가 보일러를 잡으려다 같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.

재해발생 원인

-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
- 일반 작업용 리프트를 제조 당시의 목적(운반구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)으로 사용해야 하나 임의로 리프트의 케이지를 제거하고 부적절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실시
- 사전조사,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
 - 보일러 설치를 위한 운반작업(중량물 취급 작업)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(2층 리프트 입구 바닥면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)에 대한 사전조사 및 해당 중량물로 인한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과 작업지휘자를 지정 후 작업을 진행해야하나 이에 대한 준비없이 작업실시

예방대책

-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
- 사업주는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제조 당시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금지.
- 사전조사, 작업계획서 작성후 작업지휘자 지휘에따라 작업실시
- 보일러 설치를 위한 운반작업(중량물 취급 작업)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(2층 리프트 입구 바닥면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)에 대한 사전조사 및 해당 중량물로 인한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과 작업지휘자를 지정 후 작업실시.